- 4.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 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7,8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 Q.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mark>중도</mark>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의 금액을 추가 산정함.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은 각각의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이 5%인 경우에는 239,0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1,950원을 본인이 부담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각목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

Q. 복강경을 이용한 LAVH시도 할려고 봤더니 골반장기의 유착이 심해서 개복하여 TAH한 경우에 추가 산정 가능여 부.

다지 봤다는 소견으로만은 추가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도중" 이란 말의 뜻대로 뭐가를 하다가 안되었다는

차트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이란 방법을 통해서 위의 과정을 통제한다고 합니다.